

142 (2020.9.24.)	엔알텍(주)	남경훈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가동로 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배경) 가스터빈 시장이 확대될 전망에 따라 중·대형 가스터빈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음을 줄이는 흡기·배기 시스템 개발 필요성 대두 ○ (기간) 2020년 9월 ~ 2025년 9월 ○ (주요내용) 중·대형 가스터빈의 소음 조건 등을 만족하는 흡기·배기 시스템 개발과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설비 투자 ○ (지원사항) ①정부 R&D 사업 우대 ②중소기업 정책자금(중진공) ③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 ④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143 (2020.9.24.)	(주)카라바스	장재혁	충청남도 논산시 계백로 6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배경)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테마파크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그간 준비해온 바이오 화장품 원료시장으로 신규 진출 추진 ○ (기간) 2020년 9월 ~ 2025년 9월 ○ (주요내용) 실내 동물체험 키즈파크 사업 자산 매각, 바이오 화장품 원료 생산기술 개발 및 생산 설비 구축 ○ (지원사항) ①양도차익 과세이연 ②중소기업 정책자금(중진공), 사업재편 우대보증(신보, 기보) ③고용유지 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④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환경부공고제2020-879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환경관리 대상이 되는 복합업종 사업장의 대상 시설을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취지에 맞게 명확화하고, 변경허가 대상으로 규정된 일부 사항 중 허가 검토에 준하는 중요 변경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합리화하여 사업장 부담과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업종 대상 시설 명확화

복합업종의 경우 기준서 준비상황, 오염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일부 배출 시설에 대한 제외 근거 마련

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합리화

법의 취지에 맞추어 사업장 허가조건의 재검토와 관련된 중요 변경 사항만 변경허가로 정비, 기타 단순 변경사항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비

다. 초과 부과금 산정방법 합리화

자체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시 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를 1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h.y.song89@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공고제2020-88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현재 시행 중에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 건설기계관리법 관련 인용 조문이 누락되어 추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raeah24@korea.kr

- 팩스 : 044-201-6934